

2023
민방위
교육훈련
서면교재

Contents

PART I. 민방위제도 (필수)

- I. 민방위 기본1
 - 민방위 개념과 기능·정신
 - 민방위 제도 변천 과정
 - 민방위대 운영과 교육
- II. 민방위 조직운영3
 - 지역·직장·기술지원대 구성
 - 분대별 임무와 역할
- III. 시설장비 운영4
 -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 민방위 대피시설의 종류
- IV. 동원 및 자율참여5

PART II. 실전역량학습 (필수)

- I. 민방위 경보7
- II. 응급처치9
- III. 지진대비12
- IV. 화재대비13
- V. 풍수해 대비16
- VI. 화생방 사태 대비16

PART III. 실전역량학습 (선택)

- [실전역량학습 (선택)]18
 - 테러대비
 - 감염병
 - 혼잡(인파)사고
 - 원전사고
 - 전기안전
 - 산사태
 - 건물붕괴

1-1. 민방위 기본

□ 민방위의 개념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민방위 사태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통합방위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민방위 기능	□ 민방위 정신	□ 민방위의 중요성
1. 전쟁억제의 기능 : 민간 안보 강화(비군사적 활동) 2. 재난대비의 기능 : 응급방재, 수습, 자위적 활동	1. 민간차원 방위 2. 유비무환 정신 3. 스스로의 자위적 활동	1. 전쟁억제(무력충돌시 지원기능) 2. 재난대비 재난관리 3. 생명존중, 안전문화 정착 4. 남을 돕는 자원봉사 풍토 조성

□ 민방위 제도 변천과정	□ 외국의 민방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국시대(부역) : 16~60세의 남성, 재난복구 2. 고려시대(익군) : 군정 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 국가 유사시에 출정, 종군, 숙위 임무 수행 3. 조선시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사시 대비 편제 유지, 평시 훈련만 받고 귀농 2) 의병(임진왜란, 항일 독립의용군 등) 3) 안보자치조직(오가작통법)→ 주민 신고제의 효시 4. 전쟁과 재난의 피해복구와 방지. 민방위의 효시 5.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직후 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 설치(1951년) - 김신조 청와대 기습, 향토예비군 창설 등 - 1975. 7. 2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8.22 시행령 공포- 1975.9.22 민방위대 창설 	 <p> (영국) 1940년, 지원제 (독일) 18-65세 남자 지원제 (덴마크) 1949년, 18-65세 남자 (스위스) 1962년, 20-50세 남자영구제 (이스라엘) 1951년, 16-62세 남자, 17-50세 여자 (싱가포르) 1951년, 지원제 (대만) 16-65세 남자 (미국) 1951년, 17/우급 지원제 (국제민방위기구, ICDO) 1977. 6. 제네바 협약 정회원국(60), 준회원국(17) * 대한민국 : 2017년 정회원국 가입 (1964. 비정부기구 활동) </p>

□ 민방위대 운영

○ 평상 시 : 재난대비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방위 교육과 훈련 ②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③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④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체계 관리 ⑤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차원 방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② 교통통제, 등화관제 ③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④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⑤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⑥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2. 유비무환 정신 3. 스스로의 자위적 활동

○ 편성의무자

- 20세의 1월 1일 ~ 40세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ex) 2023년도 : 198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1982년생 의무 해제)

○ 제외자(법적 당연제외자)

- 1) 군인, 경찰, 공무원(소방, 교정직), 현역입영대상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원양어선 or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 2) 대통령이 정하는 자 : 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이상),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 직권제외자 :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자

○ 지원자(민방위편입지원서 제출자)

- 17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주소지 or 거주지의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지원서 제출 (자격상실 : 주소이전 / 퇴직, 전출자) ※ 편성제외 : 1년 경과 후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제출 ※ 실종자 : 행정기관에서 확인 불가로 제외 불가

□ 민방위 교육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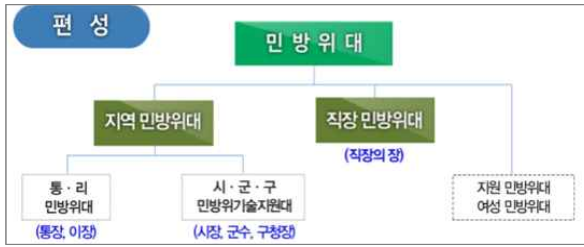
<p>○ 민방위 교육이란?</p> <p>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p>	<p>○ 민방위 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련 목적 : 매월 15일(민방위의 날), 민방위사태 대처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 2) 훈련 시기 : 필요 시 훈련실시 여부 조정 및 추가(행정안전부장관), 매년 지침 하달 -민방공 대피 훈련, 재난대비 훈련 을지태극연습연계 복합재난대비훈련, 지역단위(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훈련) 시·도단위(총무훈련연계, 주민대피훈련) 실시 																
<p>○ 민방위 교육시간 및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편성연차</th> <th>시간</th> <th>교육 방법</th> <th>교육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2년 차</td> <td>4H</td> <td>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td> <td>기본/체험형 교육</td> </tr> <tr> <td>3~4년 차</td> <td>2H</td> <td>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td> <td></td> </tr> <tr> <td>5년 차 이상</td> <td>1H</td> <td>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td> <td>비상소집훈련 제외</td> </tr> </tbody> </table>	편성연차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내용	1~2년 차	4H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기본/체험형 교육	3~4년 차	2H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 차 이상	1H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비상소집훈련 제외	<p>○ 민방위 교육의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능력을 함양 2)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생활안전 역량 제고 <p>* 교육 통지 방법 : 직접 교부, 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문서(동의 필요), 전자고지</p>
편성연차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내용														
1~2년 차	4H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기본/체험형 교육														
3~4년 차	2H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 차 이상	1H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비상소집훈련 제외														

※ 참여형 교육 : 시민안전체험관,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이수자

※ 구청장, 동장이 계획한 민방위활동(4시간 이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경진대회 참여자

<p>· 교육면제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 중인 자 2)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3) 재해 예방, 응급 대책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의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5) 해당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 시까지 유예 사유자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p>· 자체교육인정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어선/ 외항선의 선원, 1회 15일 이상 출어하는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 3개월 이상 교육중인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소 근무 공무원 6) 철도종사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등
--	--

1-2. 민방위 조직운영



대원 규모	20~40인 미만	40~80인 미만	80~300인 미만	3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단위대 조직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 지역 민방위대 :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로 나뉨
 - 1) 통·리 민방위대 :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민방위기본법 제 19조제3항)
 - 2) 기술지원대 :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
-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방호를 담당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업체 등의 직장에 설치

□ 단위대 편성

- 편제 기준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1개 통·리대는 최소 2개 분대, 분대당 인원 10명으로 조직
- 단위대 :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나뉘어 운영, 분대/소대/중대/대대/연대의 단위대를 두고 있으며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는 여러 분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 여건이나 자원 규모에 따라 편성이나 명칭이 탄력적으로 운영됨

□ 분대별 임무와 역할

분대	초동단계	대응 및 복구단계
경보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상황파악, 민방위 대장과 상황전파분대에게 보고·전파	-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등 경보전파, 대피유도
구호	- 이재민의 대피호 시설 선정 및 확보 - 식수와 취사 지원	- 통신 불가능한 상황 대비하여 통신대책 강구 - 구호품, 위문품 접수 및 배분
급수	- 유실방지를 위한 응급 보강 작업 - 비상급수계획 협조 및 정비	- 등화관계 상황 발생 시 경보전파, 인원통제 -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생수 공급 - 상수도 공사 지하수 개발지원, 생활용수 공급
대피 통제	- 취약지역 주민 대피소 안내 - 대피 인원 현황 파악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 24시간 대피시설 관찰 - 대피소 시설 내 불편사항 조치
물자 관리	- 민방위 장비 분배 - 대피소 저장 물품 확인 및 분배	- 임무수행 필요한 장비, 물자, 차량 유지관리
방호	- 비축 물자, 장비수령 후 경계 순찰조 편성 - 주요시설 방호 -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과 협조, 경계지원	- 등화관계 상황 시, 경보전파 - 주요시설 감시체계 보강
복구	- 홍수로 인해 제방이 범람 혹은 침수우려지역 물갈작업 - 농작물 유실을 예방, 소형선박의 출항 통제	- 대피소 주변 물갈작업 - 폭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실시 - 추가적인 물자 확보와 분배
본부	- 민방위 단위대 별 필요 장비 획득 및 분배	- 민방위대원 보급 지원 - 대원을 위한 숙식, 급수, 간식 확보 및 제공
상황 전파	- 기상특보, 상급제대 지시사항, 강조사항 민방위 대원에게 전파	- 동원인원 현황, 현장상황 소대장에게 보고 - 통신 불가능한 상황 대비하여 통신대책 강구
소화	- 소화기로 초기화재 진압 - 119에 화재신고 - 소방차 진입로 확보 - 환자 응급처치와 후송 준비	- 화재진압 활동 지원 - 화재지역 접근 통제 - 화재 연관사고 발생 예방조치 -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의료	- 취약지 방문 환자 대피소 이동 지원	- 인근 병원 환자치료 지원 - 임시 의료반 구성
인명 구조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노약자, 병약자 대피 지원 - 응급구조 차량 및 응급처치 필요 장비 준비	- 피해가 접수되면 출동 - 119 인명구조대원 협조·지원 - 실종자 수색, 사상자 처리
지휘	- 상황실 개소 - 대원동원율과 현재 상황을 대장에게 보고 - 방문자에게 언제든지 상황설명 가능하도록 준비	- 통신망 개통 유지 - 대원현황 및 피해 복구상황 보고 및 전파 - 사태 관련 사항 실시간 전파, 안전대책 강구
화생방	- 화생방 인지, 신고, 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용품 사용 - 현장 초동조치 및 대응	- 방독면 착용과 사용 안내 - 화학무기 공격 징후 감시

1-3. 시설장비 운영

□ 민방위 장비

○ 민방위 장비

- 1)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 2) 확보 목적 :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 화생방 장비

- 1)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 2) 확보 목적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민방위 장비는 기술대·직장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 민방위 대피시설의 종류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 1일 이상 체류(서해 5도, 접경지역)
- 공공용시설 : 민간, 공공기관 지하시설물 (충무지휘용 시설,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지하도 등), 지하상가, 지하차도 보도 등)
- 급수시설 :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사태 시 최소한의 음용수 / 생활용수 공급 위한 시설

□ 대피소 찾기 : 안전디딤돌 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



1-4. 동원 및 자율참여

□ 민방위대 동원

○ 동원요건 :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②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④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권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응급조치를 위해 각각 독자적으로 동원명령 가능)

○ 동원절차

- 명령권자 > 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원

○ 동원공고

- 방송, 신문, 행정기관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 동원 시기와 지역, 대상, 사유 등의 행동요령을 명시하며, 사이렌 타중, 경적, 신호기, 비상연락망, 확성기, 공고, 서면 등으로 명령을 통지

○ 동원명령과 해제절차

- 발생보고 > 심의 > 발령/전파 > 소집/업무수행 > 해제/사후관리
- 동원공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시,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 동원해제 : 사유 해소 시 동원권자가 해제(해제시간, 사유포함)

○ 동원 응소시간

- 동원명령에 지정된 시간 내

○ 집결장소

- 민방위대장이 지정한 장소

○ 권익보호 (직장보장 등)

- 동원(교육) 간 휴무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
- 사망 또는 부상 : 재해 / 휴업 보상금 지급(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급식/ 실시 지급, 기계/기구 동원시 사용료 지급

○ 동원유예

- 신체장애 :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직계 존·비속), 재해 : 거주지 통장/ 이장 확인서
-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 관계기관 장의 확인서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전사·사변, 비상사태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동원 불응/명령 미 이행자 조치

*직장보장 미 이행 고용주 포함
- 평시 재난사태 시 : 30만 원 이하 과태료

2-1.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1)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2)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 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도지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 민방위 경보 발생시 행동요령

○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절차

- 즉시 가정으로 복귀(중점관리대상업체직원, 직장으로 복귀)
- 교통 통제, 대중교통수단 이용(전시/비상상황 운행 차량 제외)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사용 자제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양초나 손전등을 준비, 큰 그릇에 물을 받아두고 절약
-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TV·라디오·경보 청취



○ 경계경보 전파 시 행동절차

- TV·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 수용,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을 차단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한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이동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외부 가스 밸브 차단 및 전열기코드 제거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경기 및 영업 중단
- 경보전파 및 대피준비



○ 공습경보 전파 시 행동절차

- 옥외활동 중에는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건물 내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
- 화생방 공격 대비,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생활필수품 등을 휴대하여 대피
-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승객을 모두 내리게 안내한 후 대피
- 대피한 뒤에도 정부의 안내 방송을 계속 청취



2-2. 응급처치

□ 응급처치

○ 응급처치(First Aid)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응급처치의 필요성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 응급처치의 목적

사고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는 생명구호, 손상악화 방지, 통증 감소, 장애 경감하고 치료기간 단축하여 빠른 회복을 도움. 결국 사고 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1) 의식이 있는 성인 : 본인의 동의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 의식 없는 환자 : 보호자의 동의(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하고 기다린다)	2)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3)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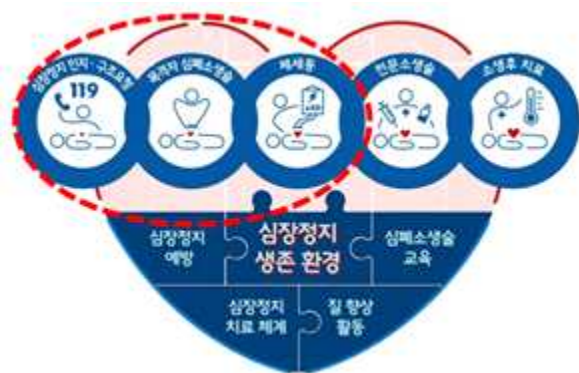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제5조의2)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CCC)

1) [CHCEK] 현장조사	2) [CALL] 119신고	3) [CARE] 처치 및 도움
< 확인해야 할 사항 > - 현장은 안전한가?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몇 명이나 다쳤는가? - 주변에 긴박한 위험은 없는가?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 주위 사람들에게 신고 요청 - 정확한 신고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 상담원에게 필수적인 정보 제공 후 질문에 대답 - 응급의료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통화 유지	< 환자를 돌보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 - 호흡과 의식 확인 - 자세 - 보온 - 음식,음료 금지 - 2차 손상 예방 - 안심(심리적 응급처치) -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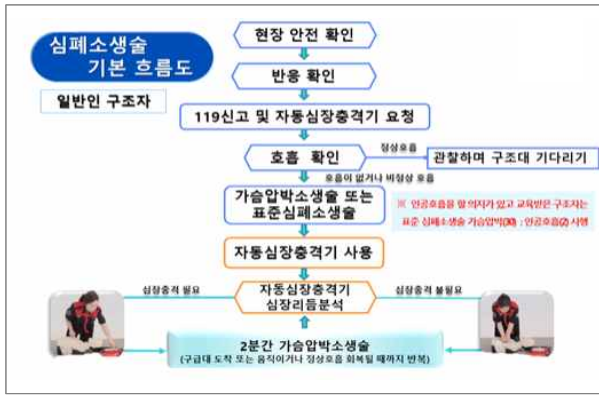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골든타임)



- 1) 심정지 원인 : 관상동맥 혈관질환자,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비만, 식습관, 흡연 등 사망의 절반이 돌연사 형태
- 2) 심정지 발생 장소 : 가정, 공공장소 등 일상 생활 중 80% 나타남.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중요
- 3) 생존사슬 :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연결고리

○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흐름도

1) 정의 :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



□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

○ 가슴압박 소생술



- 1)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2) 예외(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 질식성 & 비 심장성 환자 / 소아 및 영아 / 물에 빠진 익수자 / 약물 중독자, 외상환자

□ 심폐소생술 기억하기 : 깨> 알> 누> 사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고!)

1) 깨우기 :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 성인의 경우 환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 영아의 경우 어깨를 과도하게 흔드는 것은 경추 손상을 유발하며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서 반응을 살핀다.

2) 알리기 : 119신고, AED 요청, 의료상담원의 의료지도

- 큰소리로 특정인을 지정하여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혹은 혼자 있을 경우 스피커폰 혹은 영상통화로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 시행
- 호흡확인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며 10초 이내로 호흡확인, 의식 없는 사람의 무호흡 및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일 경우 누르기를 준비한다.

3) 누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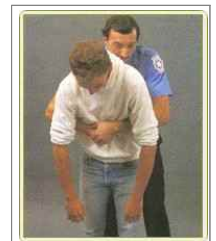
- 위치와 자세 : 가슴뼈 아래쪽 1/2 위치에 팔꿈치를 모아 두 팔이 굽지 않도록 체중을 실어 압박
- 깊이와 속도 : 약 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 - 120회 ※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최소 10초 이내)
- 기도개방과 인공호흡 : 머리 젖히고 턱 들어 올리기

□ 자동심장충격기(A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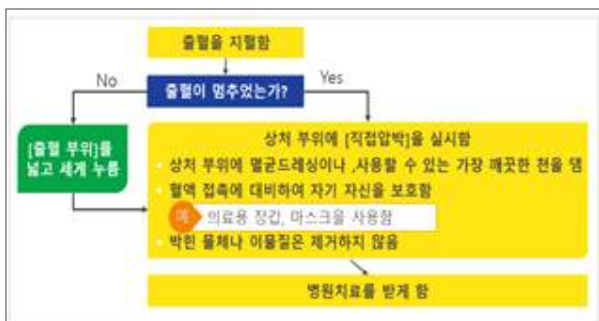
- 자동심장충격기란 ? : 심실세동을 자동분석하여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며,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은 얼마나 빨리 제세동 처치가 시행 되는가에 의해 결정되어 생존율이 3~4배 이상 증가한다.
- 설치시설 찾기 : 공공보건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 AED가 위치한 시설을 찾을 수 있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자동심장충격기의 음성 지시대로 따름)

단계	명칭	사진	음성 지시
1	전원 켜기		-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2	패드 부착 위치		- 패드1 : 오른쪽 빗장뼈 아래 - 패드2 :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참고) 패드 부착 전 확인 및 주의사항 : 탈의, 물기나 땀은 닦아 냄, 과도한 가슴 털은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심장조율기에서 3cm 떨어진 위치에 붙임
3	심장 리듬 분석		- 커넥터를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에 연결 “분석 중” , “환자에게 모두 떨어지세요.”
4	심장 충격 시행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 모두 떨어지세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제세동 후 즉시 가슴압박 시작 -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시행

- 기도폐쇄 : 부분 기도폐쇄(호흡 가능, 거친 기침, 온전한 의식)과 완전 기도폐쇄(청색증)
- 증상 : 완전 기도폐쇄 시 양쪽 손으로 목을 쥐는 ‘축킹-싸인(choking-sign)’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
- 하임리히법 : 환자의 뒤에서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환자의 상복부, 다른 손으로는 주먹 권손을 감싼 후 강하게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다.
- 영아 기도 폐쇄 처치 :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압박 5회 반복



□ 상처 및 골절 처치



- 기본 대처 및 유의사항
 - 출혈과 감염에 주의
 - 심한 출혈 환자에게는 음식물 등 제공 금지
 - 출혈 시 지혈
 - 상처가 붓거나 붉어지고 통증, 열 있으면 감염 의심
 - 혈액, 체액, 분비물에 의해 감염 : 손 씻기, 장갑 착용
- 골절 (부목사용의 원칙)
 - 부목을 대는 중에 심한 통증/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발견된 상태 그대로 부목을 댄다.
 - 손상 부위의 위쪽, 아래쪽 관절을 포함하여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댄다.
 - 부목을 대기 전과 후에 손상부위의 혈액 순환을 확인한다.
- 근육, 골격계 처치 (RICE)
 - 휴식과 안정(Rest) - 얼음찜질(Icing) - 압박(Compression) - 거양(Elevation)

2-3. 지진대비

- 지진
- 상황별 행동요령



- 장소별 행동요령



□ 지진해일

- 지진해일 대피 안내 숙지 :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
- 지진해일 대피요령
 - 1)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빨리 해안이나 하천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2)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고도 10m이상인 곳(언덕, 야산 등)으로 대피한다.
 - 3)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하니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4)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 5)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파고와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 6)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시 TV, 라디오 등 재난경보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2-4. 화재대비

□ 화재

- 화재의 위험성
 - 화재는 오후 시간에 많이 발생하며 사망자는 심야시간에 많이 발생
 - 야간에 피난의 실패로 많은 사망자 발생
 - 야간의 조기 화재발생 감지 및 정보전달, 피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 시사
 - 주요 발화 요인은 담배꽂초, 음식물 조리중,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의 '부주의'

○ 화재 예방요령

<p>1) 담배 화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은 옥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기 · 단단하고 깊은 재떨이 사용하기 · 담뱃불 확인 후 버리기 · 침실에서는 금연하기 	<p>2) 주방 화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기구 주변에 가연물 두지 않기 · 가스 사용 전·후 환기시키기 · 가스레인지 주변 벽이나 환기구 후드에 기름 찌꺼기 청소하기 · 장시간 음식 조리 중에 자리 비우지 않기 · 주방화재전용 소화기 비치하기
<p>3) 전열기구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기 전 점검 필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인증 등)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끄기 · 가연물로부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전기매트의 특정 부분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하기 · 침대 전용 전기장판· 전기요 사용하기(매트리스, 라텍스는 열 축적률이 높음) 	<p>4) 가스안전 사용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전 실내 환기 · 사용 중 불꽃 확인 · 사용 후 밸브 잠금 · 평상시 가스 누출 점검 · 가스 타이머 꼭 활용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알려라> 신고하라> 소화하라> 대피하라

○ 1단계 : 알려라

- 화재 사실을 전파 : 비상경보장치를 누르거나 큰소리로 주변에 알린다.

○ 2단계 : 신고하라

-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 침착하게 119번을 눌러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주소를 알려준다.

○ 3단계 : 소화하라



1)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구입 방법 :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 종류 : 분말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K급 소화기

- 관리 : 분말 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유효년월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 범위에 위치해야 정상

2) 소화전 :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거주자가 소화전함에 비치되어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해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 (종류 : 옥내소화전, 호스릴옥내소화전)

3) 비상소화장치

- 화재 발생 초기에 주민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고지대,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 종류 : 호스릴형(신형), 지하매설식, 호스적재형(구형)

4)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소방시설)

-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하는 장치

○ 4단계 : 대피하라 (대피 시 행동요령)



- 건물 내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피난층(1층 또는 외부로 직접 연결된 층)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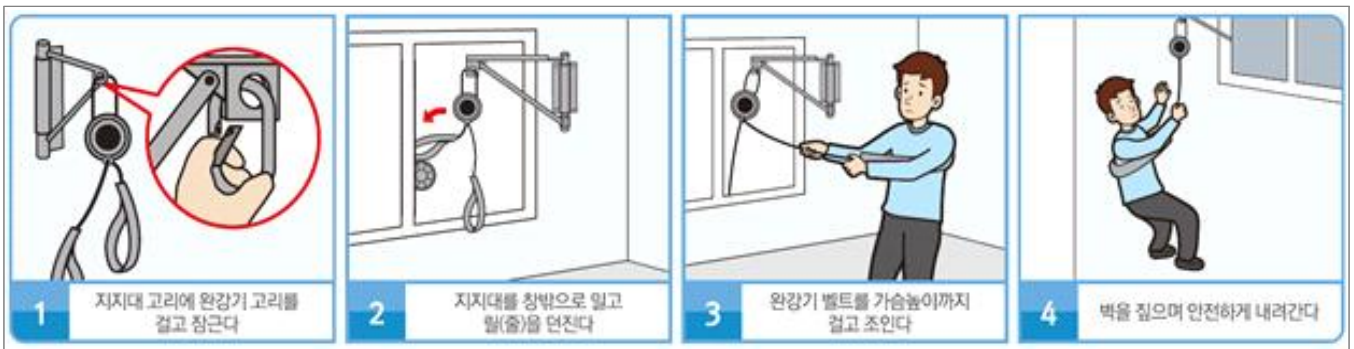
- 비상방송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에서는 안내방송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

- 주택이나 근무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사회안전 약자를 도와 함께 대피
- 출입문을 열기 전에 손등을 대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열기가 없으면 출입문을 조금 열어 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대피할 때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놓고 대피)
- 연기가 없는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택하여 유도등을 따라 대피



- 연기가 많은 장소를 통과할 때는 한 손으로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
- 부득이하게 불길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 보호
- 계단(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절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타지 않는다.)
-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대피
- 경량칸막이가 있는 경우 옆집으로 대피
- 피난층(1층 또는 외부로 직접 연결된 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평소 해당 건물이 화재시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 대피 시 옷에 불이 붙으면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뒹굴기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고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구조대원의 구조를 기다림
-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의 건물(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 대피 시에는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대피(밖으로 나온 뒤에는 안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됨)

□ 완강기 사용법



○ 민방위 대원의 역할

1) 주민 대피 유도

- 화재경보 발령 및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대피유도(계단, 옥상 대피유도)하고 대피 완료를 확인

2) 교통 통제

- 화재 현장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지원(소방차 접근과 구급차 이동을 위한 동선 확보와 소화전 주변 공간 확보 및 급수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급수 지원 및 운영)

3) 주변 차량 및 군중 통제

- 군중 현장 접근 통제 및 안전관리, 주변 주차 차량 이동 유도, 교통 통제선 설치, 주행중인 차량 갓길로 정차 유도

2-5. 풍수해 대비

□ 풍수해

○ 풍수해 정의

-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호우 특보 예상 시	호우 특보 발령 시	강풍 특보 예상 시	강풍 특보 발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계곡 등 위험지역 대피 ✓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이동 ✓ 집 주변 배수구 미리 점검 ✓ 가족과 함께 대피방법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자제, 기상정보 지속 확인 ✓ 외부에 있는 가족 안전 확인 ✓ 하천변, 해안가 등 접근 금지 ✓ 가로등, 지하공간 등 접근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설치물 고정 및 보강 ✓ 창문 흔들림 점검 및 보강 ✓ 밖에 있는 물건은 실내 이동 ✓ 비닐하우스 취락 부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간판 등 낙하물 주의 ✓ 차량운행 중에는 속도 감속 ✓ 유리문 등 위험물 접근 금지 ✓ 크레인 등 야외 작업 중지

□ 침수 시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침수공간 탈출

목적
지하철, 지하주택·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차오를 때 출입문 개방 가능성 측정



방법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개방불가
-전기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수심	신체위치	탈출여부	
		남자	여자
30cm	-	○	○
40cm	종아리	○	×
50cm	무릎	×	×

※ 신에 묶는 탈출방법 가능함

- 1)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한다.
- 2)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므로,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한다.
- 3)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한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한다.
- 5) (지하계단) 지하계단은 경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한다. 특히,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즉시 대피한다.

6. 화생방 사태 대비

□ 화생방전

화생방전 = 화학전 + 생물학전 + 핵/방사능전

화학전 (Chemical Warf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작용제를 운용하여 사람 등에게 살상 또는 무능화 ✓ 지역 및 장비·물자 오염을 통해 자원의 운용 제한
생물학전 (Biological Warf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이나 생물에서 나오는 독소 사용 ✓ 사람 및 살상 및 무능화, 사람 및 물자의 이동제한
핵/방사능전 (Nuclear & Radi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를 이용 인원 및 자원 파괴 ✓ 방사능을 유포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 제한

○ 화생방전

- 적을 살상하거나 지역 및 장비·물자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화생방작용제를 전쟁 수단으로 운용하는 일반적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의 총칭

○ 화생방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 민방위대원 임무 및 역할

- 일반대원 : 개인 생존, 주민 경보 및 방호요령, 안전 대피 유도
- 화생방분대원 / 기술지원대 : 오염지역 탐지와 표시, 오염인원 및 장비·지역제독 등

1) 화생방 경보 전파 작용제 종류 등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에 전화, 네트워크, SNS 등으로 전파	2) 보호요령 전파 - 호흡기 보호(물수건, 마스크, 휴지 등) - 피부 보호(비닐주머니, 옷소매 내림 등)
3) 비 오염지역으로 대피·유도 - 도심지역 : 고층건물 상층으로 대피 - 원점기준 윗바람지역 : 바람을 안고 대피유도 - 원점기준 아랫바람지역 : 최단거리 측방 대피유도	4) 오염지역 출입통제 - 오염지역 표시 및 출입통제 - 오염인원, 장비, 지역 제독

□ 방독면

○ 방독면의 종류 : 구형 / (정화통) 분리형 A, B사, 일체형

※ 일반 방독면 : 정화통은 공기를 정화하지만 산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 시 사용 불가

※ 화재 전용 방독면 : 지하철 역사 보관함 등 비치되어있는 방독면은 화생방 상황 시 사용 불가

□ 방독면 착용법

단계	(분리형) 방독면 착용법
1	• 방독면 휴대용 주머니를 어깨에 착용하여 휴대
2	• 오염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용 주머니에서 방독면과 정화통 은박 기밀포장지를 확인
3	• 방독면(두건부)와 정화통 기밀포장지를 꺼내어 포장제거
4	• 정화통의 장착구 보호마개를 제거
5	• 방독면 두건부에 정화통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장착, 정화통 흡입구의 보호 고무덮개를 제거
6	• 두건부의 렌즈쪽을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착용
7	• 방독면 착용 후 얼굴에 밀착되도록 머리끈을 조절하고, 내부 목조임 끈을 조임
8	•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숨을 길게들이 쉬고 안면부가 밀착되는지 확인

[실전역량학습 (선택)]

□ 테러 대비

- 테러의 위험성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고조와 외로운 늑대 등 자생적 테러 증가
- 테러가 의심될 때
 - 테러 의심 또는 피해상황 목격 시,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상세히 기억하여 신고
 - 테러 의심 또는 피해상황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113), 소방서(119)

<p>○ 테러상황 시 행동요령</p>	<p>○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p>
<p>○ 폭발물 테러 시 행동요령</p>	<p>○ 억류·납치 테러를 당했을 경우</p>

○ 해외여행 위험국가 방문 자제

-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확인
- 2) [해외안전여행] 앱을 설치하고 외교부 발송 문자 수신 확인
- 3) 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동행서비스] 클릭> 동행 가입
- 4) 해외 체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3단계:적색경보-철수권고 >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감염병 (감염병 예방수칙)

- ①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기
- ②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
- ④ 어린이,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 ⑤ 도마, 칼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하기
- ⑥ 발열, 기침, 코막힘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줄이기

□ 혼잡사고

○ 군중쓸림 및 압착 : 군중 쓸림은 사람이 급하게 한 쪽으로 몰리며 발생하는 것이며, 군중압착은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한다. 군중 밀도 제곱미터당 5명이 넘으면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

○ 군중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1) 발생 전

-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곳에 방문을 되도록 자제하며 방문 시 발을 보호하는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간다.
- 밀집 장소의 가까운 출구 외 모든 출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둔다.

2) 발생 시

- 인파가 물리는 느낌이 들면 재빨리 그 장소를 빠져나온다. 가슴 압박 사고를 대비하여 팔짱을 끼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한다
- 산소 확보를 위해 고함과 비명은 자제하며 인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3) 발생 후

- 옆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심폐소생술 등 구조활동을 돕는다.

□ 원전사고

○ 실내 대피 통보 시

- 신속히 귀가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에어컨과 환풍기는 즉시 끈다.
- 손과 발, 얼굴을 씻고 옷도 갈아입는다.
- 음식물은 밀봉하고 밖에 널린 세탁물은 안으로 들여온다.
- 귀가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이동한다.

□ 전기안전

- 단락(합선) : 정격 용량의 퓨즈와 과전류 차단기,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고 손상 여부 등 수시로 점검한다.
- 누전 : 건물 혹은 대용량 전기기구의 배선 별 누전차단기 설치, 배선의 피복 손상 여부 수시 확인한다.
- 전기 스파크 : 전기기구 사용 후 플러그 제거, 전기시설 부근에 가구, 위험물, 기타 가연물은 두지 않는다.
- 과부하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을 금하며 전기 기구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한다.
- 과열 : 사용한 전기기구의 플러그 제거,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산사태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주의보 및 경보단계)

- 지역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장소를 사전에 숙지 및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 준비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유선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 예의 주시한다.
-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한다.
-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며 대피 후 기상 등 위험상황의 추이를 확인한다.

□ 건물붕괴

○ 붕괴 징조를 느낄 때

-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 기둥 및 주변에 균열이나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때에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119,112,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 붕괴에 대비하여 가스를 잠그고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지자체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붕괴사고 발생 시(건물 내부에 있을 때)

-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는다.
-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음식물이 있을 경우 소비를 조절하며,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에는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민방위 표준교재』, 2019

행정안전부, 『민방위 표준교재』, 2022

소방청,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2018

행정안전부,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